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9. 7. 13 .
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일부 조문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“단장은” 을 “단장은 단원이 호선하여” 로 하고, “지정한다” 를 “지명한다” 로 하며, “단체 또는 개인 중” 을 “단원중에서” 로 하고, “주소” 를 “주소 또는 소재지” 로 함 (안 제3조)
- 나.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,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으로 나누고,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3조제6항)
- 다. “협의회는” 을 “협의회는 방재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” 로 함 (안 제6조제2항)
- 라. 소집방법은 방재단관리시스템,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8조제2항)
- 마. 재난지역의 현장활동에 필요한 방재물품 구입비 (안 제9조제8항제7호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2항 중 “단장은” 을 “단장은 단원이 호선하여” 로 하고, 같은조 제3항 중 “지정한다” 를 “지명한다” 로 하며, 같은조 제4항 중 “단체 또는 개인 중” 을 “단원중에서” 로 하고, 같은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조 제7항 중 “주소” 를 “주소 또는 소재지” 로 한다.

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,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으로 나누고,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.

안 제6조제2항 중 “협의회는” 을 “협의회는 방재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” 로 한다.

안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안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소집방법은 방재단관리시스템,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.

안 제9조제8항 중 “제6호” 를 “제7호”로 하고, 같은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재난지역의 현장활동에 필요한 방재물품 구입비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3조(조직)</p> <p>① “생 략”</p> <p>② <u>단장은</u>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한다</p> <p>③ 부단장은 단장이 <u>지정한다</u></p> <p>④ 간사는 <u>단체 또는 개인 중</u> 단장이 지명한다</p> <p>⑤ “생 략”</p> <p>⑥ <u>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</u></p> <p>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<u>주소</u>를 둔 개인·단체·기업체·기관·학교·종교단체·동호회 등으로 한다. 단, 방재업무상 단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⑧ ~ ⑩ “생략”</p> <p>제6조(자율방재협의회)</p> <p>① “생략”</p> <p>② <u>협의회는</u> 방재단장이 회장이 되고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, 동대표,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~ ⑤ “생략”</p>	<p>제3조(조직)</p> <p>① “원안과 같음”</p> <p>② <u>단장은 단원이 호선하여,</u>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한다</p> <p>③ - - - - - <u>지명한다</u></p> <p>④- - - <u>단원중에서</u> - - - - -</p> <p>⑤ “원안과 같음”</p> <p>⑥ <u>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,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으로 나누고,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⑦ - - - - - - - <u>주소 또는 소재지</u>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</p> <p>⑧ ~ ⑩ “원안과 같음”</p> <p>제6조(자율방재협의회)</p> <p>① “원안과 같음”</p> <p>② <u>협의회는 방재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,</u>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</p> <p>③ ~ ⑤ “원안과 같음”</p>

원 안	수 정 안
<p>제7조(임무)</p> <p>① ~ ④ “생 략”</p> <p>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 반별로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</p>	<p>제7조(임무)</p> <p>① ~ ④ “원안과 같음”</p> <p>⑤ “삭 제”</p>
<p>제8조(소집)</p> <p>① “생 략”</p> <p>②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고,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소집)</p> <p>① “원안과 같음”</p> <p>② 소집방법은 방재단관리시스템,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 할 수 있다.</p>
<p>제9조(운영 등)</p> <p>① ~ ⑦ “생략”</p> <p>⑧ “생 략”</p> <p>1 ~ 5 “생략”</p> <p>“신 설”</p> <p>6.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</p>	<p>제9조(운영 등)</p> <p>① ~ ⑦ “원안과 같음”</p> <p>⑧ “원안과 같음”</p> <p>1 ~ 5 “원안과 같음”</p> <p>6. 재난지역의 현장활동에 필요한 방재 물품 구입비</p> <p>7.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6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방재단”은 단장 1인, 부단장 1인,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함.
- 나. “방재단”은 자연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,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함.
- 다. “방재단”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함.
- 라.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구청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.
- 마.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이나 영리목적과 정치활동 등 소송이나 단체의 쟁의에 참석하는 행위와 방재단에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.
- 바.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함.
- 사.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을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함.

3. 제정근거

- 1) 지역자율방재단 조례표준안 시달
(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-3839, 2009. 3. 12)
- 2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

4. 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예산필요, 방재단 구성 후 2010년도 예산편성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(2009. 5. 15 ~ 2009. 6. 3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9. 6. 4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60조, 제62조, 제6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마포구"라 한다)에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(이하 "방재단"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조직) ① 방재단은 단장 1인, 부단장 1인,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.

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임명한다.

③ 부단장은 단장이 지정한다.

④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.

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,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,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,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.

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주소지를 둔 개인·단체·기업체·기관·학교·종교단체·동호회 등으로 한다. 단, 방재업무상 단장이
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.

⑧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(이하 “동 방재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할 수 있다.

⑨ 동 방재단원은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마포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.

⑩ 동 방재단의 대표는(이하 “동 대표”라 한다) 해당 동 방재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.

제4조(임원의 임무 및 임기)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.

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재난안전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,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.

⑤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.

⑥ 단장, 부단장, 간사, 동 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해임)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

2. 단원이 마포구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. 다만,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
5.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
제6조(지역자율방재협의회)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·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·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한다.

② 협의회는 방재단장이 회장이 되고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, 동 대표,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.

④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, 장비,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·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제7조(임무)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,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.

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방재단의 인적·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
2.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·정비
3. 재난 예방·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
4. 재난관련 교육·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·훈련실시
5.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전달, 주민대피유도, 차량 통제 등
6.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,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지원

7.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지원(전기, 통신, 상·하수도 등)
 8. 재난지역의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
 9. 비상시 현장 필요인력, 장비, 물품 등에 대한 수요 파악 및 통보
 10.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, 구조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, 차량통제 등 자율방재활동 전개
-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범위, 시기,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.
 -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.

제8조(소집)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,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.

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. 다만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 등)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“단원 활동현황 총괄표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종합상황실(이하 “종합상황실”이라 한다)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. 단,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, 인원, 조건,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⑥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.

⑧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, 여비, 유류대 등 필수 경비
2.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, 부상,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. 단,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
3. 제복, 모자,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
4. 단원의 교육·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·훈련에 소요되는 비용
5.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
6.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

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“단원 활동현황 총괄표”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(금지행위)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
2.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
3.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4.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

제11조(출입증 발급)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
② 출입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.

제12조(교육)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,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(민간기관 포함)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 단,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“민방위교육 추진지침”에 따른다.

제13조(훈련)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중앙지원단 자문 등)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·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

급할 수 있다.

제15조(감독)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
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을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
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<개인>

등록번호 : _____

성 명	○○○(성별)	연 령		혈 액 형	
주 소				일반전화	
				휴대전화	
자 격 증 또는 기능			운전가능여부 (면허종류)		
재 난 현장경험	※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) ○○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, 이재민 구호, 차량통제, 인명구조, 장비지원.....등 구체적으로 정리				
희 망 활동내용	※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				
[특이사항]					
※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					

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
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가입희망자 ○ ○ ○(인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<단체>

등록번호 : _____

단 체 명		대 표 자	○○○ (휴대전화)	
주 소			대표전화	
담 당 자	○○○ (휴대전화)	부서명		
인 원	남 ○○명	여 ○○명	총인원	○○명
장 비	장비명(규격) ○○ 대	장비명(규격) ○○ 대	장비명(규격) ○○ 대	장비명(규격) ○○ 대
지원가능	남 ○○ 명	장비(규격) ○○대	장비(규격) ○○대	장비(규격) ○○대
	여 ○○ 명			
전문분야	※ 단체의 성격 정리 예) 인명구조, 이재민 구호, 장비지원, 차량지원.. 등 구체적으로정리,			
활동희망분야	※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			
<p>[특이사항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[별지 제1-2호 서식]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)</p>				

상기 본 단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대 표 ○ ○ ○(인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활 동 확 인 서

성 명	(인)	등록번호	※ 서식1의 등록번호
활동내용	사 유	※ ○○태풍, ○○지역 집중호우, ○○지역 설해 등	
	방 법	※ 인력,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	
	시 간	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 부터 ~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 까지 (○○시간)	
	장 소	※ ○○면(군)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	
	내 용	※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) ○○지역 사전예찰 00시간, ○○마을 차량통제, 00시간 ○○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	
[건의사항]			
※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			
확인자	직위	○○읍(면동)대표	성명 (인)

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

- ※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
- ※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

단원 활동현황 총괄표

등록 번호	성 명	활 동 상 황		비 고
		횟수	시간	
1				
2				
3				
⋮				

※ 등록번호

- 개인의 경우는 [별지 제1호 서식]의 등록번호를 기재
- 단체의 경우는 [별지 제1-1호 서식]의 등록번호와 [별지 제1-2호 서식]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[(예) 10-1]

※ 횟수,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

※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 등으로 관리

※ [별지 제2호 서식]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

※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

[별지 제4호 서식]

‘○○년도 연중 활동계획서

[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]

월별	주요내용	비고
1	○ ○	
2	○ ○	
3	○ ○	
4	○ ○	
5	○ ○	
6	○ ○	
7	○ ○	
8	○ ○	
9	○ ○	
10	○ ○	
11	○ ○	
12	○ ○	

※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

※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

[별지 제5호 서식]

출 입 증

